[ 특별공제 ]
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해당 연도에 특별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\*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
\*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

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.(재경부 소득 46073-1, 2000. 1. 11)

󰊱 보험료 공제

◦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 금액

구 분공제금액제출서류비 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(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6.55%)전액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(보장성보험)의 보험료연 100만원근로자가 보험료납입영수증\* 등을 제출보험료 합계액 기준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의 보험료연 100만원보험료 합계액 기준

\* 보험료 공제 가능한 보험 확인방법

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“보험료공제대상”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“장애인전용보험”으로 표시됨

의료비 공제

◦ 공제대상 의료비

-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됨

-공제대상 의료비

진찰･치료･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(미용･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)치료･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(한약 포함)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(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)장애인보장구 및 의사･치과의사･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\*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(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)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

\*장애인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의미하며,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함

◦ 공제 절차

①근로자의 당해 연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%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되는 금액이 없음

②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→ 근로자는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의료비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

③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의 “⑥본인 등 해당여부란”의 기재 내역에 따라 의료비지출금액을 소득공제신고서의 각종소득공제항목(의료비)란 및 의료비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구분 기재

의료비지급명세서란

⑥본인 등 해당여부⇨소득공제신고서 기재방법

(특별공제/의료비)공제한도본인･65세 이상자･장애인

(표시 “○”)인 경우 합계금액을 본인･65세 이상자･

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공제한도 제한 없음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

(표시 “×”)인 경우합계금액을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란에 기재700만원

④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･의료비지급명세서･의료비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

⑤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공제액이 200만원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형식으로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

◦ 지출 항목별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

의료비 지출 항목증빙서류비 고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-의료기관 및 약국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계산서･영수증, 진료비(약제비) 납입확인서 연말정산

간소화 서비스

(www.yesone.go.kr)에서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(’08.7.1이후)-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, 개별 지급내역 기재)

-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, 연간 지급내역 기재)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-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(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기재)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-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-의사･치과의사･한의사의 처방전 및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(의료용구명 기재)

◦ 공제되지 않는 비용 예시

-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

-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용

-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

-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

-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,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

-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

-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

-미용․성형수술을 위한 비용

교육비 공제

◦ 교육비 공제 대상 등

-대상자： 교육비 공제대상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아 기본공제를 하지 않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

-공제 가능한 지출액：수업료･입학금･보육비용･수강료 및 그 밖의 공과금을 합산한 금액(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제외)

교육대상자교육비한도비 고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･직계비속･형제자매･입양자∙유아교육법, 초･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(대학원 제외)에 지급한 교육비\*

∙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ㆍ원격대학,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

∙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, 초･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\*\*

∙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,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월 단위로 1주 1회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교습을 받고 지급한 수강료1인당 공제한도

구분한도초등학교취학전

아동300만원초ㆍ중ㆍ고대학생900만원

\*포함되는 것

대상내용어린이집

유치원

초ㆍ중ㆍ고교과서대,

학교급식비,

방과후학교수업료(교재구입비 포함)중ㆍ고교복구입비

(50만원 이내)

\*\*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교육대상자는 유학요건을 갖추어야 함

교육대상자교육비한도비 고근로자

본인∙부양가족에 인정되는 공제대상 교육비(보육 시설․학원에 지급한 교육비 제외)

∙대학(전공대학ㆍ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)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

∙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\*한도 없음\*\*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제외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

∙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 등에 지급하는 비용
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
-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

-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

- 장애인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(만18세 미만)한도 없음- 직계존속 포함

-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

◦(교육비 공제 배제 금액)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

-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

-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

-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

-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

-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

◦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

구 분증빙서류비고국내교육기관 학생교육비납입증명서간소화제공국외근무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

지출교육비납입증명서직접 영수증 발급국내근무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

지출교육비납입증명서

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(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)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교육비납입증명서학원･체육시설을 이용하는

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교육비납입증명서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･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교육비납입증명서간소화제공학교 외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교육비납입증명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교육비납입증명서장애인 재활교육과정교육비납입증명서,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직접 영수증 발급

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

◦ 공제한도

공제항목개별한도통합한도특별공제주택